

등록번호	여성가족과-6041
등록일자	2016.2.12.
결재일자	2016.2.15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드림스타트팀장	여성가족과장	복지환경국장	
위정임	송정자	윤혜경	전결 02/15 이우룡	
협조				

2016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계획

시민단체 「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」 운영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청소년 탈선·비행예방 및 선도활동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활동을 강화하고자 함.

2016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계획



복지환경국
여성가족과

I 추진배경

- 청소년 유해환경 및 불건전 매체로부터 청소년보호
-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민운동 차원의 효율적 감시활동 방안 제시

II 사업목표

- 관내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
 -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의 당위성 인식으로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캠페인 활동 전개
 -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자체 정화활동 방법 모색

III 사업개요

- 지원근거 및 사업비 구성
 - 청소년보호법 제5조(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)
 - 국비 50% 시비 50%로 매칭 및 편성

■ 사업내용

-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유해환경밀집지역 감시활동 및 홍보
-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적발시 사진 등 증거 확보 및 관계기관에 신고·고발
-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사항 관계기관 시정 건의
- 업주·지역주민 등 대국민 계도활동 및 청소년 보호·선도 활동
- **아동학대관련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홍보 활동(2016년 사업추진계획 포함)**

■ 지원대상 선정

- 지원대상
 -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6개 단체의 사업계획서 검토 후 당해 연도 지원단체 선정
- 지원내역

구 분	활동중점지역	구역수	감시단별 지원금액(연간/천원)	비 고
계		71	-	· 지원 단체 수 및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※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거 단체별 2~5백만원 지원
“가”급 단체	청소년 출입금지구역	5	3,600	
“나”급 단체	청소년 출입제한구역	3	3,350	
“다”급 단체	청소년유해업소 밀집구역	63	2,400	
“라”급 단체	청소년유해업소 밀집구역		2,000	

- “가” ~ “라”급 단체 차등지원 기준
 - “가”급 : 금지지역을 신청한 감시단 중 전년도 실적이 우수한 단체
 - “나”급 : 제한지역을 신청한 감시단 중 전년도 실적이 우수한 단체
 - “다”급 : 밀집지역을 신청한 감시단 중 전년도 실적이 우수한 단체
 - “라”급 : 밀집지역을 신청한 감시단 중 전년도 실적이 양호한 단체
- ※ “가”~“나”급 미선정된 단체는 “다”~“라”급(밀집구역)으로 전년도 실적고려 임의 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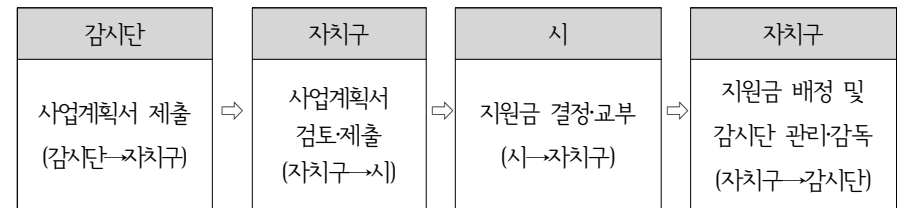
■ 청소년유해환경 중점 감시대상 지역 및 감시단 현황

구 분	중 점 감 시 지 역		인근 학교명
	구 역 명	개소/업소 수	
청소년통행금지구역	-	-	-
제한구역	서울역앞 일대	1/35	경기여상
밀집지역	두타 · 밀레오레 일대	1	광희초등, 한양공고

● 감시단 현황

연번	단체명	대표	지정일자	구성인원 (명)	2015년 지원액 (등급)	비 고
1	한국청소년육성회 본부	박문서	98.07.13	195	2,000천원(라)	
2	한국청소년육성회 중부	한학진	00.11.22	97	2,200천원(다)	
3	한국청소년육성회 남대문	오병국	00.05.10	110	3,000천원(나)	
4	해병전우회 중구지회	이성호	98.10.19	99	3,000천원(나)	청소년통행금지제한 구역 책임 감시단
5	특수임무유공자회 중구지회	설동춘	09.02.03	32	2,200천원(다)	
6	법무부법사랑 중구지회	김학철	15.02.16	43	2,200천원(다)	

■ 지원절차



- 지원시기 : 1차 '16년 2월, 2차 '16년 7월
- 지원방법 : 시 → 자치구 일괄지급 → 단체 지급

■ 지원금 용도

- 감시활동비는 교통비 포함 시간당 1만원 이하
- 시설장비유지 관리비(냉난방비) 및 홍보 자료비(리플렛, 어깨띠 제작 등)
- 지원예산액 중 50% 이상은 현장 감시활동 경비(온라인 모니터링 포함) 편성
- ※ 감시단활동과 관련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금지(예: 단체 회식비, 법인 물품구입 등)

IV 행정사항

■ 여성가족과

- 2016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업계획서 단체 제출(2016.02.15.)
- 시 청소년담당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원금 교부 요청(2016.02.17)
- 시 청소년담당관 지원금 교부 통보 후 단체 지원금 지급(2016.03월 예정)
-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관할 경찰서 등 합동캠페인(2016.상반기)
-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금 사용 적정여부 확인 및 지도 점검(2016.하반기)

- 붙임 1. 2016년도 유해환경감시단 사업계획서(지원신청서) 1부.
 2. 유해환경감시단활동실적, 정산결과보고서 및 감시활동내역 각 1부. 끝.

[붙임1]

○○ **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 계획서(감시단별)**
 (000구청)

I. 사업 목적 및 목표

○

II.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

○

○

III. 기대효과

○

○

IV. 사업추진 일정(구청과 합동단속 계획, 자체평가 계획 포함)

- 구청과 합동단속 계획은 대략적인 시기, 장소, 구성인원 정도 작성..

V. 2016년도 지원금 신청 내역

단체명	2016년도 신청"등급"	2015년도 지원"등급"	회원수	활동중점지역 (금지,제한,밀집구역 중)	주요 활동계획
	※ 구청 확인,작성			예) 녹번역,수색역, 응암오거리 초,중고 학교주변	예) ○ 5-12월 1개조 3명씩 매주 2회 학교주변 및 우범지역 순찰 ○ 캠페인 : 5월,12월, 수능전후 연간 12회

※ 금지(가급), 제한(나급), 밀집구역(다~라급)별 신청등급 확인하여 작성

VI. 소요예산 내역

(단위: 원)

세부사업명	예산액	산출내역	비고

[붙임2]

2016년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

작성자 : 소속 직급 성명 (전화번호)

I. 시·도별 활동 실적 총괄

1. 감시단 활동 종합 평가(☞ 자치구 작성)

○

※ 지역 내 청소년유해환경 특성 및 2015년도 감시단 활동 전반을 간략하게 정리·평가

2. 실적 총괄표(☞ 자치구 취합)

(상반기/하반기)

구분	예산 (단위 : 백만원)		① 감시·순찰 (캠페인 포함)		②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(건)	③ 신고· 고발 (건)	④ 시정· 권고 (건)	⑤ 기타활동	
	보조금	자부담	(회)	(명)				(회)	(명)
총계									
감시단명				참여한 감시단 인원수 기재					참여한 감시단 인원수 기재

II. 감시단별 활동 실적 (☞ 감시단 작성)

○○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

1. 활동 총평

○

* 감시단별 지역 청소년유해환경 특성, 활동 성과 등 2016년도 감시단 활동 전반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

2. 감시단 현황

소재지(주소)		사무실 연락처	전 화	
			팩 스	
단 장	성 명	실무책임자	성 명	
	직 업		E-mail	
감시단 지정일자		주 된 활 동		
감시단 구성인원	총 ○ 명 (명부작성인원 명)	감시단 담당직원		○ 명
운 영 재 원 (2015년도)	총 ○ 백만원 • 국 고 ○ 백만원 (%), 지자체 지원 ○ 백만원 (%) • 단체 차체조달 ○ 백만원 (%), 기 타 ○ 백만원 (%)			
기 타 사 항				

3. 감시단 활동 실적

1) 활동 실적 총괄

(상반기/하반기)

구분	*예산 (단위 : 백만원)		① 감시·순찰 (캠페인 포함)		②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(건)	③ 신고· 고발 (건)	④ 시정· 권고 (건)	⑤ CYS-NET, 쉼터 등 연계건수 (건)	⑥ 기타활동	
	보조금	자부담	(회)	(명)					(회)	(명)
감시단명	국비+ 지방비			참여한 감시단 인원수 기재						참여한 감시단 인원수 기재

☞ 항목별 작성방법 안내(중요!!)

▣ 실적 작성시에는 감시단 활동일지 등 증빙자료가 있는 내용만 기재하고 수치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주의할

것

구분	산출 방법
* 예산	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라도 자부담 지출비용 기재
① 감시·순찰	청소년보호법 위반여부 순찰 및 캠페인 활동횟수와 참여한 감시단 인원수를 기재하되, 활동횟수 1회는 1일을 기준으로 함.
② 유해매체물 모니터링	유해매체물 모니터링 건수를 기재하되 유해매체물 종류, 위반사항, 조치사항 등 일련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1건으로 산출함. ※ 유해매체물의 범위(청소년보호법 제2조) - 비디오물, 게임물, 음반, 연극, 영화, 음악, 방송, 신문 등 간행물, 인터넷사이트 등
③ 신고·고발	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경찰서, 지방자치단체 등에 실제로 신고·고발한 건수만 기재함.
④ 시정·권고	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·권고 조치한 건수를 기재하되 적발 일시, 위반업소, 위반사항, 시정·권고일자 등 일련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1건으로 산출함.
⑤ CYS-NET. 컴퓨터 등 연계건수	CYS-NET, 청소년컴퓨터 등 청소년상담·보호기관 연계건수 기재
⑥ 기타활동	기타 세미나, 교육프로그램, 홍보활동 등 각종 활동내역을 기재하되 활동일자,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경우 1일 1회로 산출함. (기출, 비행 청소년에 대한 상담·선도 활동의 경우도 공식적 활동 1일을 1회로 산출함)

2) 세부 활동실적

①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신고·고발 활동

▣ 상기 활동실적 중 신고·고발건수 및 시정·권고건수와 일치할 것

(작성례)

분야별	일시	지역 및 위반업소명	신고내용	신고기관	조치결과	비고
신고/고발	2016.11.16	광화문불고기	청소년주류제공	관할지구대 112신고	입건조치	
시정/권고	2016.11.16	광화문만화방	격리·구분 불비	종로구 청소년계	1차 시정촉구	

②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정화 활동

▣ 상기 활동실적 중 감시·순찰건수 및 유해매체물 모니터링건수, 기타활동 건수와 일치할 것

(작성례)

분야별	일시	지역	활동내용	활동건수	활동결과	참여인원
감시/순찰	2016.11.16	세종문화회관 뒷편	유해지역 순찰활동	30여개 업소	홍보 및 계도	20명
모니터링	2016.11.20	스포츠신문	스포츠서울 홈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 모니터	5건	성인 인증장치 개선촉구	-
상담/선도	2016.11.27	광화문근처	흡연 등 비행·가출청소년 선도, 상담 등	20건	상담 5건 선도15건	3명

4. 특이 사항, 기타사업 및 수범사례

○ 감시단 소재지 내 청소년유해환경 관련 특이 사항 등 기재, 감시활동 외 기타사업 및 수범사례 내역

※ 신·변종 유해업소 실태 및 유해약물, 물건, 매체물 관련 특이사항 기재

5. 감시단 활동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

-
-

※ 실적 제출 시 유의사항

- 자치구에서는 본 활동실적 작성시 각 개별 감시단에 비치되어 있는 활동실적 증거서류 (업무일지 등)를 철저히 확인 요망
- 학교감시단에서는 상기 서식이 실적 작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동 서식에 준해서 자체 실정에 맞는 서식을 만들어 활동실적을 제출

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감시 활동 내역(제○회)

- ※ 매 1회 유해환경감시(거리 모니터링 포함) 및 아동지킴이 활동시 마다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.
- ※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활동의 경우 아래 양식에 준하여 ① 활동확인서, ②계좌이체 영수증 ③ 모니터링 결과보고서(책자로 인쇄)를 제출토록 함.

1. 활동 개요 및 참석 확인증

- 일 시 :
- 장 소 :
- 참가자

연번	성 명	생년월일	연락처	지급액	자필 서명
총계	○명			○○원	
1				30,000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8					
9					
10					

2. 활동 내용

※ 활동 내용을 개조식으로 작성 (주요 내용 및 실적 위주로 작성)

3. 활동 사진 (3매)

- ※ 1매는 참석자 전원이 나오는 사진으로 첨부하되, 사진에 날짜가 나오도록 할 것

4. 계좌이체전표 또는 현금인출영수증

- ※ 활동비 계좌 이체의 경우 전표 첨부토록 하며, 현금지급시엔 현금인출영수증을 첨부하되 참석자 수와 통장 현금 인출액이 일치토록 하며 할 것 (불참자 발생시 통장 재입금 조치)

5. 감시활동 유류비 영수증

- ※ 유류비는 1회 활동 기준 차량 1대에 한하여 5만원까지 인정하되, 활동 전일 또는 당일 영수증만 인정함 (체크 카드 결제)